## 소음 · 진동 공정시험기준

ES 03304.1d

## 도로교통소음관리기준 측정방법

2024

(Measurement Method of Exterior Noise Emitted by Road Vehicle for Management Standards)

## 1.0 개요

## 1.1 목적

이 시험기준은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소음을 측정함에 있어서 측정의 정확성 및 통일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반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#### 1.2 적용범위

이 시험기준은 소음·진동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1 제1호에서 규정하는 소음관리기준 중 도로교통소음을 측정하기 위한 시험기준에 대하여 규정한다.

## 2.0 **용어정의** "내용 없음"

### 3.0 분석기기 및 기구

### 3.1 사용 소음계

KS C IEC 61672-1에 정한 등급 2의 소음계 또는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가진 것이어야 한다.

#### 3.2 일반사항

3.2.1 소음계와 소음도기록기를 연결하여 측정·기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 소음 도 기록기가 없는 경우에는 소음계만으로 측정할 수 있다.

- 3.2.2 소음계 및 소음도기록기의 전원과 기기의 동작을 점검하고 매회 교정을 실시하여야 한다. (소음계의 출력단자와 소음도기록기의 입력단자 연결)
- 3.2.3 소음계의 레벨레인지 변환기는 측정지점의 소음도를 예비조사한 후 적절하게 고정시켜야 한다.
- 3.2.4 소음계와 소음도기록기를 연결하여 사용할 경우에는 소음계의 과부하 출력이 소음기록치에 미치는 영향에 주의하여야 한다.
- 3.3 기기 설정 (청감보정회로 등)
- 3.3.1 소음계의 청감보정회로는 A특성으로 설정한다.
- 3.3.2 소음계의 동특성은 원칙적으로 빠름(fast)모드로 설정한다.
- 3.3.3 소음계의 샘플주기는 1 초 이하로 설정한다.
- 4.0 시약 및 표준용액 "내용 없음"

## 5.0 시료채취 및 관리

#### 5.1 측정점

5.1.1 측정점은 피해가 예상되는 자가 거주하는 건물 또는 사업장(事業場)의 경계로부터  $1.0~m~\sim~3.5~m~$  떨어진 지점 중 소음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지점의 지면 위  $1.2~m~\sim~1.5~m~$  높이로 한다.

5.1.2 측정지점에 높이가 1.5 m를 초과하는 장애물이 있는 경우에는 장애물로부터 소음원 방향으로 1.0 m ~ 3.5 m 떨어진 지점으로 한다. 다만, 장애물로부터 소음원방향으로 1.0 m ~ 3.5 m 떨어지기 어려운 경우에는 장애물 상단 직상부로부터 0.3 m 이상 떨어진 지점으로 할 수 있다. 또한, 그 장애물이 방음벽이거나 충분한 차음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장애물로부터 소음원 반대방향으로 1.0 m ~ 3.5 m 떨어진 지점 중 암영대(暗影帶)의 영향이 적은 지점으로 한다.

5.1.3 위 5.1.1 및 5.1.2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피해가 우려되는 곳이 2층 이상의 건물인 경우 피해가 우려되는 자가 거주하는 세대(世帶) 또는 사업장(事業場)에서 소음원 방향으로 창문·출입문 또는 건물벽 밖의 0.5 m ~ 1.0 m 떨어진 지점으로 할 수 있다. 다만, 건축구조나 안전상의 이유로 외부측정이 불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창문 등의경계면을 측정점으로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1.5 dB(A)을 측정값에 더한다.

#### 5.2 측정조건

#### 5.2.1 일반사항

- 5.2.1.1 소음계의 마이크로폰은 측정위치에 받침장치(삼각대 등)를 설치하여 측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
- 5.2.1.2 손으로 소음계를 잡고 측정할 경우 소음계는 측정자의 몸으로부터 0.5 m 이상 떨어져야 한다.
- 5.2.1.3 소음계의 마이크로폰은 주소음원 방향으로 향하도록 하여야 한다.
- **5.2.1.4** 풍속이 2 m/s 이상일 때에는 반드시 마이크로폰에 방풍망을 부착하여야 하며, 풍속이 5 m/s를 초과할 때에는 측정하여서는 안 된다.
- 5.2.1.5 진동이 많은 장소 또는 전자장(대형 전기기계, 고압선 근처 등)의 영향을 받는 곳에서는 적절한 방지책(방진, 차폐 등)을 강구하여야 한다.

#### 5.2.2 측정사항

요일별로 소음변동이 적은 평일(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)에 당해지역의 도로교통 소음을 측정하여야 한다. 단, 주말 또는 공휴일에 도로통행량이 증가되어 소음피해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주말 및 공휴일에 도로교통 소음을 측정할 수 있다.

#### 5.3 측정시간 및 측정지점수

- 5.3.1 2개 이상의 측정지점수를 선정한다.
- **5.3.2** 주간 시간대(06:00~22:00)에는 소음피해가 예상되는 시간대를 포함하여 4시간 이 상 가격으로 2회 이상 측정한다.
- **5.3.3** 야간 시간대(22:00~06:00)에는 소음피해가 예상되는 시간대와 심야시간대(00:00~04:00)를 포함하여 4시간 이상 간격으로 2회 이상 측정한다.

## 6.0 정도보증/정도관리(QA/QC) "내용 없음"

### 7.0 분석절차

#### 7.1 측정자료 분석

측정자료는 다음 경우에 따라 분석·정리하며, 소음도의 계산과정에서는 소숫점 첫째 자리를 유효숫자로하고, 측정소음도(최종값)는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.

#### 7.1.1 디지털 소음자동분석계를 사용할 경우

- 7.1.1.1 10분 이상 측정하여 자동 연산ㆍ기록한 등가소음도를 그 지점의 소음도로 한다.
- 7.1.1.2 각 측정지점별로 2회 이상 측정한 소음도를 각각 산술평균하여 지점별 소음도를 구하고 각 지점별 소음도를 산술평균하여 측정소음도를 구한다.

#### 7.1.2 소음연속자동측정기를 사용할 경우

7.1.2.1 4시간 이상 측정하여 자동 연산·기록한 등가소음도를 그 지점의 소음도로 한다.

7.1.2.2 각 지점별 소음도를 산술평균하여 측정소음도를 구한다.

## 8.0 결과보고

#### 8.1 평가

7.1에서 구한 측정소음도를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1 제1호 도로교통소음의 관리기준과 비교하여 평가한다.

#### 8.2 측정자료의 기록

소음평가를 위한 자료는 **10.3 도로교통소음 측정자료 평가표** [서식 6]에 의하여 기록하며, 측정값에 대한 증빙자료(수기제외)를 첨부한다.

### 9.0 참고자료

- **9.1** KS I ISO 1996-1 "음향-환경소음의 표현, 측정 및 평가방법-제1부:기본 양과 평가절차", (2021)
- 9.2 KS I ISO 1996-2, "음향 환경소음의 표현, 측정 및 평가방법 제2부 : 음압 레벨의 결정", (2021)
- 9.3 KS C IEC 61672-1, "전기음향 사운드레벨미터(소음계) 제1부: 규격", (2022)

## 10.0 부록

## 10.1 도로교통소음 측정자료 평가표

[서식 6]

# 도로교통소음 측정자료 평가표

작성년월일 :	년	월	일
---------	---	---	---

1. 측 정 년 월 일	년	. 월 일	잌	<u> </u>		시	분부터
			-	E		시	분까지
2. 측 정 대 상	소재지 :						
	도로명 :						
3. 관 리 자							
4. 측 정 자	소속 :		직명 :		명 :	(인)	
	소속 :		직명 :	성	명 :	(인)	
5. 측 정 기 기	소음계명	:					
	부속장치 : 삼각대, 방풍망						
Ⅰ 6 즉 정 환 경   □	반사음의	영향 :			풍속 :		
	진동, 전자장의 영향 :						
7. 측정대상과 측정지	점						
도로구조 교통특성		성	측정지점	약도(또는	: 사진)		
차 선 수 :		시간당	강 교통량				
도로유형 :		(		대/ <i>hr)</i>			
구 배:		대형치	ト 통행량				
기 타:		(		대/ <i>hr</i> )			
		평균치	수				
		(		km/hr)	(지역구분	:	)

- ※ 현장 상황에 따라 확인 가능한 범위에서 작성
- 8. 측정자료 분석결과(기록지 등 첨부)

측정소음도 : dB(A)

(첨부) 측정값의 인쇄 자료 등 증빙자료